



교직원 명예퇴직 시행 규칙

규정번호	3-2-19
제정일자	2015.09.01
개정일자	2019.07.01
개정번호	ver. 1 총페이지 8

제정 2015년 9월 1일
개정 2019년 7월 1일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교법인 동양학원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의 공지) 총장은 명예퇴직의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, 명예퇴직일 등 명예퇴직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.

제3조(퇴직의 신청)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[별표 1]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명예퇴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명예퇴직심사위원회” (이하 ‘심사위원회’ 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행정처장 및 행정부처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 단, 명예퇴직대상자가 직원만 있을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근속기간의 산정) ① 근속기간은 임용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휴직기간의 1/2에 해당하는 기간. 다만,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정관 제 41조 제2호, 제4호,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.

2. 정직, 직위해제 또는 강등에 의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의 1/2에 해당하는 기간

② 정년잔여기간 계산 시 10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며 10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심사 및 선정) ① 담당부서에서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[별표 2]의 절차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사하여 명예퇴직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제청한다.

② 명예퇴직자의 심사·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근속연수

2. 신청인 소속 학부(과), 부서의 현황

- 3.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
- 4.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퇴직수당)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- 1.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: 퇴직당시 월 통상임금의 50% × 정년잔여월수
 - 2.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: 퇴직당시 월 통상임금의 50% × {60 + (정년잔여월수 - 60) ÷ 2}
 - 3. 10년 초과인 자 :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
- ② 퇴직당시의 월 통상임금은 [별표 4]에 따른다.

제8조(수당 지급)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칙) 이 규칙의 개정은 총장의 허락을 득하여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9.07.01.>

교직원 명예퇴직 신청서

소 속		교직원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	직 급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
최초임용일	년 월 일	정년퇴직예정일	년 월 일		
근속연수	년 월	정년잔여월수 (수당지급대상기간)	월		
전화번호		주 소			

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정관 제49조,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신청합니다.

- 붙임 1. 명예퇴직 사유 및 기여도[별표 1-1] 1부.
 2. 학부(과) / 부서 검토 의견서[별표 1-2] 1부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소속 부서장 (인)

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

[별표 1-1]

명예퇴직 사유 및 기여도

명예퇴직 신청 사유
대학발전 및 소속부서 기여도

[별표 1-2]

학부(과) / 부서 검토의견서

1. 신청자

학 부(과)	직 급	성 명

2. 학부(과) / 부서 검토의견

상기와 같이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학부(과) / 부서의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 부서장 (인)

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

[별표 2]

명예퇴직자 선정 절차

순번	절차	내용	담당
1	퇴직신청	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자는 [별표 1]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.	소속부서 담당부서
2	심사위원회 소집	명예퇴직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.	담당부서
3	심사	심사위원회에서 제6조 제2항 및 [별표 3]의 선정 기준에 의해 심사한다.	심사위원회
4	대상자 선정 및 수당책정	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총장은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[별표 4]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책정한다.	총장
5	퇴직대상자 제청 및 최종 선정	총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첨부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이사장에게 제청한다.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면 명예퇴직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다.	총장
6	퇴직자 확정 통보	총장은 명예퇴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이 확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다.	총장
7	퇴직수당 지급	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.	사무처

[별표 3] <개정 2019.07.01.>

명예퇴직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

구 분	평 가 방 법								
정성평가 (30점)	대학발전 기여도								
정량기준 (70점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557 900 745 1037">심사항목 (배점)</th> <th data-bbox="745 900 1374 1037">정량 심사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57 1037 745 1184">근속연수 (45점)</td> <td data-bbox="745 1037 1374 1184">근속 1년당 1.5점, 잔여월당 0.1점 가산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57 1184 745 1534">직위 (40점)</td> <td data-bbox="745 1184 1374 1534"> ◦ 교원 : 교수 40점, 부교수 30점, 조교수 20점 ◦ 일반직 직원 : 5급 이상 40점, 6급 30점, 7급 20점, 8급 이하 10점 ◦ 기술직 직원 : 근속연수의 점수 × 40/30 ◦ 교육행정직 직원 : 근속연수의 점수 × 40/30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57 1534 745 1749">보직 재임기간 (15점)</td> <td data-bbox="745 1534 1374 1749">보직 재임기간 1년당 1점, 잔여월당 0.05점 가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심사항목 (배점)	정량 심사점수	근속연수 (45점)	근속 1년당 1.5점, 잔여월당 0.1점 가산	직위 (40점)	◦ 교원 : 교수 40점, 부교수 30점, 조교수 20점 ◦ 일반직 직원 : 5급 이상 40점, 6급 30점, 7급 20점, 8급 이하 10점 ◦ 기술직 직원 : 근속연수의 점수 × 40/30 ◦ 교육행정직 직원 : 근속연수의 점수 × 40/30	보직 재임기간 (15점)	보직 재임기간 1년당 1점, 잔여월당 0.05점 가산
	심사항목 (배점)	정량 심사점수							
	근속연수 (45점)	근속 1년당 1.5점, 잔여월당 0.1점 가산							
	직위 (40점)	◦ 교원 : 교수 40점, 부교수 30점, 조교수 20점 ◦ 일반직 직원 : 5급 이상 40점, 6급 30점, 7급 20점, 8급 이하 10점 ◦ 기술직 직원 : 근속연수의 점수 × 40/30 ◦ 교육행정직 직원 : 근속연수의 점수 × 40/30							
	보직 재임기간 (15점)	보직 재임기간 1년당 1점, 잔여월당 0.05점 가산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심사점수가 각 심사항목별 배점의 최고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 최고 점수만 부여함 ◦ 정량평가는 정량 심사점수의 70%를 반영함 									
총 배점	100점								

[별표 4]

월 통상임금

월 통상임금 포함 항목 (교직원 보수지급 지침 보수 책정 항목)	월 통상임금 불포함 항목 (교직원 보수지급 지침 [별첨 5] 기타수당)
봉 급	보 직 수 당
정 근 수 당	반지도수당
명절휴가비	직 무 수 당
정근수당가산금	가 족 수 당
정액급식비	자녀학비 보조수당
직급보조비	성과상여금
연구보조비 / 사무수당	시간외수당
	연가보상비
	기 타 수 당
	일용인부임